

부산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2가단353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11. 1.

판 결 선 고 2022. 1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1988. 8. 9. 접수 제32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800만 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1988. 8. 9. 접수 제320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D은 사망하였고 원고는 D의 상속인 중 한명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되었거나 시효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변제기가 정하여져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이 체결된 1988. 8. 9.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 그로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의 사망 이후에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채무를 인지하고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시효중단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정우

별지